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별표 11 제1호자목 단서에 따라 폐기물 매립시설에서 매립한 폐기물을 파내는 경우

제18조의2제7항 중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화학사고로 인해 발생한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법 제17조제6항제5호 사유에 따라 처리계획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에 앞서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고 처리가 종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8조의2제7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확인서

제29조제1항제2호바목3) 중 “제2호나목2)바)”를 “제2호나목2)사)”로 한다.

제33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8호”를 “제9호”로, “제7호”를 “제8호”로 한다.

8. 매립시설 침출수 처리방법의 변경

제39조제3항제6호라목 중 “나목2)바)”를 “나목2)사)”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제2호나목2)차)”를 “제2호나목2)카)”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3항제1호”를 “제3항제1호 및 제7호”로 한다.

7. 매립시설 침출수 처리방법의 변경

제41조제5항제1호 및 제5호 중 “사용개시일부터 5년”을 각각 “최초 허가(변경허가와 변경승인·신고를 제외한다) 후 사용개시일부터 5년”으로 한다.

제79조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토지이용에 따른 설계도서 및 구조계산서 사본

3. 제69조의2제5항에 따른 사후관리 정기검사 결과서 사본

별표 5 제4호다목2)러)(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각이 곤란한 경우에는 (2)와 같은 방법으로 매립할 수 있다.

별표 11 제1호자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최종처분시설”을 “매립시설”로 하고, 같은 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매립한 폐기물의 재활용, 환경오염 방지 등 공익상 목적으로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매립한 폐기물을 파낼 수

있으며, 굴착기준 및 절차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11 제1호자목1)부터 3)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2)가)를 제2호나목2)가)(1)로 하고 제2호나목2)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2)가)(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는 오염되지 않은 물로 희석해서는 안 된다. 다만, 침출수의 염분이나 유기물의 농도가 높아 원래의 상태로는 생물화학적 처리가 어려워 희석하여야만 수질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침출수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시 희석할 수 있으며, 적용대상과 절차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11 제2호나목2)마) 중 “한다.”를 “하며, 침출수의 수위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로 하고, 같은 목 차)(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투수성이 낮은 흙(이하 “복토재”라고 한다), 별표 4의2 제3호나목 1) 또는 같은 표 제4호다목의 재활용 유형에 따른 복토재 재활용 제품을 사용하여 일일복토 및 중간복토 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 제9호 단서에 따라 시설의 전부를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복토재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 일일복토는 매립작업이 끝난 후 복토재 등을 15센티미터 이상의

두께로 다져야 한다. 다만, 복토재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하 “대체 복토재”라고 한다)을 사용하여 일일복토 할 수 있으며, 대체복토재의 종류와 복토기준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중간복토는 매립작업이 7일 이상 중단되는 때에 노출된 매립층의 표면부분에 복토재 등을 30센티미터 이상의 두께로 다져 기울기가 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다음의 경우 일일복토와 중간복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폐기물 중 복토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소각재·도자기조각·광재류·폐석고·폐석회·폐패각·석탄재·연탄재·폐유리·폐석분토사·폐석재·석재 또는 골재폐수처리오니 등 악취의 발생이나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기물만 매립하는 경우

② 빗물의 침투를 방지하고 폐기물이 외부로 흩날리거나 악취가 발생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주변지역에 영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매립시설의 경우

별표 11 제2호나목2)차)(2) 중 “화학복토재 등 인공복토재는”을 “대체복토재”로 한다.

별표 19 제3호나목2)를 제3호나목2)가)로 하고, 제3호나목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별표 19 제3호나목2)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 3) 중 “한다”를 “하며, 침출수의 수위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로 한다.

나)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는 오염되지 않은 물로 회석해서는 안 된다. 다만, 침출수의 염분이나 유기물의 농도가 높아 원래의 상태로는 생물화학적 처리가 어려워 회석하여야만 수질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침출수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시 회석할 수 있으며, 적용대상과 절차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별지 제23호서식 뒤쪽 나목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3항제1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3항제1호 및 제7호”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1. ~ 8. (현행과 같음)

9. 별표 11 제1호자목 단서에 따
라 폐기물 매립시설에서 매립
한 폐기물을 파내는 경우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지정 폐기물 처리계획
의 확인) ① ~ ⑥ (현행과 같
음)

⑦

다

음 각 호의 서류

<단서 신설>

<신 설>

1. 삭 제

<신 설>

⑧·⑨ (생 략)

제29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①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가. ~ 마. (생 략)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화학사고로 인해 발생한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법 제17조제6항제5호 사유에 따라 처리계획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에 앞서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고 처리가 종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 능력확인서

⑧·⑨ (현행과 같음)

제29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① -----

1. (현행과 같음)

2. -----

--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주요 설비의 변경. 다만, 다음 1)부터 4)까지의 경우 만 해당한다. 1) · 2) (생 략) 3) 별표 9 제2호나목2)바) 에 따른 가스처리시설 또 는 가스활용시설이 설치 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4) (생 략) 사. · 아. (생 략) 3. (생 략) ② · ③ (생 략) 제33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 ①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폐 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를 하여 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1. ~ 7. (생 략) <신 설> 8. (생 략) ②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1 항제1호 · 제2호 및 제8호의 경 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 터 30일 이내에, 제1항제3호부 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변경	바. -----. ----- -----. 1) · 2) (현행과 같음) 3) ----- 제2호나목2)사)- ----- ----- ----- 4) (현행과 같음) 사. · 아.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3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 ① ----- ----- ----- --. 1. ~ 7. (현행과 같음) 8. 매립시설 침출수 처리방법의 변경 9. (현행 제8호와 같음) ② ----- ----- 제9호----- ----- ----- -- 제8호-----
---	--

전에 각각 별지 제21호서식의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서에 허
가증과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운반차량을 감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
인 등) ①·② (생 략)

③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6. 주요설비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가. ~ 다. (생 략)

라. 별표 9 제2호 나목2)바)에
따른 가스 처리시설 또는
가스 활용시설이 설치되거
나 변경되는 경우

마. 별표 9 제2호나목2)차)에
따라 침출수매립시설환원
정화설비를 설치하거나 변
경하는 경우

바. (생 략)

<신 설>

-----.

제3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
인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5. (현행과 같음)

6.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 나목2)사)-----

마. ----- 제2호나목2)카)-----

바. (현행과 같음)

7. 매립시설 침출수 처리방법의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면 변경 전에, 제3항제1호에 해당하면 승인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별지 제23호서식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략)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3항제1호의 경우만 제출한다) 3. ~ 5. (생략) 제41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및 검사) ① ~ ④ (생략) ⑤ 법 제30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멸균분쇄시설은 제3호의 기간을 말한다.	<u>변경</u> ④ ----- 제7호-----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 ----제3항제1호 및 제7호---- ----- 3. ~ 5. (현행과 같음) 제41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및 검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 -----
---	--

1. 소각시설, 소각열회수시설 및 열분해시설 :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와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사용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제8항에 따라 검사결과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3년이 되는 날

2. ~ 4. (생략)

5. 시멘트 소성로: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와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사용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 2회 이후의 정기검사

1. -----

최초

허가(변경허가와 변경승인·
신고를 제외한다) 후 사용개
시일부터 5년-----

2. ~ 4. (현행과 같음)

[illegible]

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년 이 되는 날 ⑥ ~ ⑪ (생 략) 제79조(토지이용계획서의 첨부서류) 영 제35조제2항에서 “기후 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 류”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 다. 1. <u>이용하려는 토지의 도면</u> 2. (생 략) 3. <u>지적도</u>	<u>사용개시일부터 5년</u>----- ----- ⑥ ~ ⑪ (현행과 같음) 제79조(토지이용계획서의 첨부서류) ----- ----- ----- --. 1. <u>토지이용에 따른 설계도서 및 구조계산서 사본</u> 2. (현행과 같음) 3. <u>제69조의2제5항에 따른 사후 관리 정기검사 결과서 사본</u>
---	--